

행정자치부

주의·시정 요구

제 목 영구보존 대상 중요기록물의 등록관리 부적정

기 관 명 경상남도

관 계 기 관 창원시, 밀양시, 의령군, 남해군, 하동군, 함양군, 거창군, 함천군

내 용

「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」 제1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0조에 따르면 공공기관은 기록물을 생산 또는 접수한 때에는 그 기관의 전자기록생산시스템으로 생산 또는 접수 등록번호를 부여하고 이를 그 기록물에 표기하여야 하며, 중앙기록물관리기관의 장이 정하는 등록번호를 전자적으로 생산·관리하여야 하고, 이러한 등록정보는 임의로 수정 또는 삭제되지 아니하도록 관리하여야 하며

같은 법 제19조에 따르면 공공기관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기록물의 보존기간, 공개 여부, 비밀 여부 및 접근권한 등을 분류하여 관리하여야 하고

같은 법 시행령 제23조 따르면 공공기관은 업무수행과정이 반영되도록 단위과제의 범위 안에서 1개 이상의 기록물철(과제관리카드)을 만들어 해당 기록물을 편철하여야 하며, 처리과의 장은 단위과제별 기록물철 작성기준을 정하여 체계적으로 편철·관리되게 하여야 하고

같은 법 시행령 [별표 1] 기록물의 보존기간별 책정기준에서 공공기관의 연도별 업무계획과 이에 대한 추진과정에 대한 기록물은 영구보존대상으로 관리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

같은 법 시행규칙 제5조제2항에 따르면 기록물의 접수기관에서 부여하는 접수등록번호는 시행문 서식 또는 접수인에 의하여 접수된 기록물은 접수번호란

에 접수등록번호를 표기하거나, 시행문 서식 또는 접수인에 의하여 접수된 기록물 외의 접수기록물에 대하여는 우측 상단의 여백에 같은 법 시행규칙 [별표 1]의 표시방법에 따라 접수등록번호를 표기하여야 한다.

그러나, 경상남도 창원시(○○○○관), 의령군(○○○○실), 남해군(○○○○실), 하동군(○○○○실), 합천군(○○○○실)은 2012년부터 2016년까지 업무부서로부터 해당년도의 주요업무계획을 제출받아 「연도별 주요업무계획」 관련 기록물을 생산하였으나, 동 기록물을 전자기록생산시스템에 영구보존대상 기록물로 등록·관리하지 않은 사실이 있고

경상남도 밀양시(○○○○○○관)는 2014년부터 2016년까지, 경상남도 함양군(○○○○실)은 2015년부터 2016년까지, 경상남도 거창군(○○○○실)은 2013년부터 2016년까지 업무부서로부터 해당년도의 주요업무계획을 제출받아 「연도별 주요업무계획」 관련 기록물을 생산하였으나, 동 기록물을 전자기록생산시스템에 영구보존대상 기록물로 등록·관리하지 않은 사실이 있다.

조치할 사항 창원시장, 밀양시장, 의령군수, 남해군수, 하동군수, 함양군수, 거창군수, 합천군수는

[주의] 앞으로 관련법령을 준수하여 소홀한 관리사례가 재발하지 않도록 대책을 강구하시기 바라며, 지적된 사항에 대하여 「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」 및 같은 법 시행령의 관련 규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생산·접수한 기록물을 전자기록생산시스템을 이용하여 등록·관리하시기 바랍니다.

[시정] 기 생산된 「연도별 주요업무계획」이 멸실되지 않도록, 보존기간을 영구로 책정하여 전자기록생산시스템 또는 기록관리시스템을 통하여 등록·관리하시기 바랍니다.